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과 부수현상론

김기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kihyeon@snu.ac.kr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 다를 경우에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무력할 수 있다는 문제, 즉 정신적 속성의 부수현상론을 현대 심리철학의 핵심적 문제로 부각시킨 철학자는 데이빗슨이다.¹ 사실 이러한 상황에는 다소의 아이러니가 있다. 데이빗슨 자신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하여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였는데, 많은 심리철학자들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오히려 정신으로부터 인과적 힘을 빼앗는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의 주장은 무엇이고, 그의 주장이 정신의 부수현상론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데이빗슨은 다음의 세 원리를 받아들인다.

1. 인과적 상호관계의 원리: 물리적 사건과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정신적 사건들이 있다.
2. 인과의 합법칙성 특성의 원리: 인과가 있는 곳에 법칙이 반드시 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사건들은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에 포함된다.
3. 심적 무법칙성: 정신적 사건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기반이 되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없다.

이 원리들은 상당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3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엄밀한 법칙이 없을 뿐 아니라,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을 이어주는 엄밀한 법칙도 있을 수 없다. 둘 중의 한 유형의 엄밀한 법칙이 있다면, 선행하는 정신적 사건으로부터 또는 선행하는 물리적 사건으로부터 엄밀한 법칙에 따라 정신적 사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로부터는 대우에 의하여 엄밀한 법칙이 없으면 인과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와 3으로부터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인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며, 이 결론은 1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빗슨은 법칙을 사건 유형에 귀속시키고 인과 관계를 개별자들에 귀속시킴으로써, 이러한 외관상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에 따르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법칙에 의하여 포착하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유형화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즉, 앞서의 사건을 A 유형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뒤의 사건을 B 유형의 사건으로 이해하여야만,

¹ Davidson (1970)

이를 근거로 하여 두 사건을 법칙을 통하여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적 무법칙성의 원리는 두 사건을 물리적 용어로 유형화하였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가 엄밀한 법칙으로 포착될 수 있지만, 심적인 용어로 유형화되었을 때에는 엄밀한 법칙을 통하여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나에게 발생한 특정한 고통의 경우를 보자. 이 사건은 C 섬유가 활성화된 특정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나에게 있어 얼굴을 찡그린 특정한 사건을 야기한다. 데이빗슨의 주장은 얼굴을 찡그린 사건을 야기한 선행 조건을 심적인 유형의 사례로 포착하면, 즉 고통으로 서술하면 이 유형의 사건과 얼굴을 찡그리는 유형의 사건 사이를 이어주는 엄밀한 법칙이 구성될 수 없는 반면, 선행 사건을 C 섬유 활성화로 유형화하면 이 유형의 사건과 얼굴 찡그림이라는 유형의 사건을 이어주는 엄밀한 법칙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빗슨은 하나의 사건이 정신적 사건으로 유형화될 수도, 물리적 사건으로 유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엄밀한 법칙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봄으로써, 1과 2를 조화시키려 한다. 모든 정신적 사건은 그 개별성의 차원에서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파란색 원의 경우를 보자. 비록 파람이라는 성질과 원임이라는 성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파람이 예화된 이 사건과 원임이 예화된 이 사건은 개별자의 차원에서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고통임이라는 성질과 C 섬유 활성임이라는 성질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고

통이 예화된 이 사건과 C 섬유 활성이 예화된 이 사건은 개별성의 차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을 개별성의 차원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 1과 2를 조화하는 방법이 쉽게 마련되는 듯하다. 한 사건을 c 섬유 활성의 사례로 간주함으로써 이 사건과 얼굴 찡그림 사이의 관계를 엄밀한 법칙에 포섭시켜 양자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보하고(2의 만족), 다음에 앞서의 사건이 사례의 차원에서 고통의 사례와 동일하므로 고통의 사건이 얼굴 찡그림의 사건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의 만족).

데이빗슨이 위와 같은 논증을 통하여 정신 인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논증이 오히려 정신의 인과적 무력성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다음의 예는 그들의 해석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소프라노가 푸치니의 오페라 중의 한 아리아를 극도의 고음으로 노래하는 중에 그 노래에 의하여 창문이 깨졌다고 하자.² 소프라노의 고음의 노래와 창문의 깨짐 사이에는 분명히 인과적 관계가 있다. 이때 그 고음의 노래는 일정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인 동시에 높은 주파수를 가진 물리적 사건이기도 하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데이빗슨은 앞 사건을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물리적 사건으로 기술할 경우에 이 사건과 창문의 깨짐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는 인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

² 이 예는 Dreiske (1989)에서 빌려 온 것이다.

된다. (2에 의하여) 그리고, 데이빗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앞의 사건은 일정한 내용을 가진 노래이기도 하므로, 일정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과 창문의 깨짐 사이의 관계도 인과 관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과의 조화) 그러나 데이빗슨의 논증이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논증은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 문제의 본질은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을 동시에 예화하고 있는 한 사건이 물리적 사건을 야기하였을 경우에, 그 인과 관계가 앞 사건이 갖고 있는 정신적 속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물리적 속성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인과 관계가 정신적 속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에서만 정신과 물질 사이의 인과 관계가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소프라노의 노래는 정신적 속성으로서의 가사의 내용과 물리적 속성으로서의 주파수를 동시에 예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어떤 속성이 창문을 깨트리는 과정에 인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신과 물질의 인과 관계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이 과정에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소프라노의 노래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창문이 깨졌다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높은 주파수를 가진 사건이 일정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이고, 이 사건이 창문을 깨

트리는 데에 인과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정신적 내용을 가진 사건이 인과적 힘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³

위의 논의는 정신의 인과적 효력의 문제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의 문제이며, 다만 정신적 사건의 인과적 효력을 보여주는 데이빗슨의 논증은 필요한 의미에서 정신의 인과적 효력을 구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데이빗슨의 비판자들은 데이빗슨의 논증이 정신의 인과적 효력을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의 인과적 효력을 부정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저변에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사건들은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에 속한다”는 인과의 합법칙성 특성의 원리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놓여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엄밀한 법칙만이 인과적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속성들만이 인과적 효력을 인정 받는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데이빗슨의 원리가 이렇게 해석되면, 이는 “정신적 사건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기반이 되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은 없다”는 심적 무법칙성 원리와 결합하여 정신 속성의 인과적 무력성을 바로 함축하게

³ 이는 마치 파란색의 둥근 원이 굴러가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파란 사건과 이 둥근 사건이 동일하므로 파람이 굴러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다음의 논문들은 위와 같은 논지를 한 목소리로 제시하고 있다: Sosa (1984), Dretske (1989), Jaegwon Kim (1984), Horgan (1989).

된다. 정신적 속성은 엄밀한 법칙에 포섭될 수 없고, 엄밀한 법칙에 포섭되는 속성만이 인과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속성은 인과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가 위와 같이 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맥로프린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면서 다음의 두 주장을 구분한다.

1. 모든 인과적 성질들은 필연적으로 엄밀하게 법칙적이다.
2. 오직 엄밀하게 합법칙적인 성질들만이 인과적이다.

1은 인과 관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들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기술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2는 엄밀한 법칙에서 언급되는 속성들만이 인과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맥로프린에 따르면, 데이빗슨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전자를 함축하지만, 후자의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 “인과 관계에 있는 사건들 사이에는 반드시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법칙이 있다”는 데이빗슨의 주장은 “두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기술할 경우에 그 사건과 그에 의하여 야기되는 물리적 사건 사이의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된다”는 것을 말할 뿐이며, 두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의 토대를 제공하는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인과에 대한) 법칙 포섭적 견해는 어떤 유형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가 개별적인 인과적 거래의 토대가 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⁴고 주장한다. 정신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과 같은 조건이 첨가된 엄밀하지 않은 느슨한 법칙(hedged laws)에 의하여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고⁵, “정신적 성질이 없었더라면, 물리적 속성도 없었을 것이다”과 같은 반사실적 가정문을 통하여 그 인과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며⁶, 이런 가능성을 데이빗슨의 견해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데이빗슨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물리적 기술을 통하여 제시되었을 때)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데이빗슨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 해석은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와 심적 무법칙성의 원리가 갖는 직관적 호소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정신 인과를 단지 개별자로서의 정신적 사건과 개별자로서의 물리적 사건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신적 속성에 의거한 인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를 새로이 해석하여 정신적 속성을 그 인과적 효력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토대지워져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따라서 제 3의 방식, 제 4의 방식에 의하여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토대지우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⁴ McLaughlin (1989), 127.

⁵ Fodor (1989) McLaughlin(1989).

⁶ LePore and Loewer (1987), Horgan (1989)

여기에서 맥로플린은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물리적 속성과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의하여 토대지워진다는 입장을 옹호한다. 그리고, 데이빗슨 자신도 그러한 입장에 동조적인 방향으로 기운다.⁷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외관상으로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슨의 이론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를 위와 같이 약하게 해석하고, 이 해석을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이 물리적 속성과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토대가 놓아진다는 견해와 결합시켜 보자. 그리고, 이들이 정신적 사건이 행동을 야기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진단을 내리게 되는가를 보자. 선행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뒤따르는 행동을 B라고 하자. A는 정신적 속성 M을 예화함과 동시에 물리적 속성 P를 예화한 사건이다. (예를 들어, A는 C 섬유 활성을 예화한 사건임과 동시에 고통을 예화한 사건이다.) 인과의 토대를 반사실적 의존 관계로 이해하는 위 입장에 따르면, A가 B(예를 들어, 얼굴 찡그림)을 야기한 근거는 “M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M 속성과 B 속성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있다. 한편, 앞서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에 대한 앞서의 해석은 이 경우에 대하여 P 유형의 사건과 B 유형의 사건 사이에 결정론적이고 엄밀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함축한다. 그런데, M은 여러 상이한 물리적 토대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은 맥로플린과 현재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정이다. 그렇다면, M이 P가 아닌 다른 물리적 속성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즉, P'이 M을 실현한 경우에도, 이 사건이 B를 야기한 토대는 M과 B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P'과 B 사이에는 엄밀하고 결정론적인 법칙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맥로프린의 입장은 다음의 두 주장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1. M 사건이 B 사건을 야기한 토대는 M과 B 사이의 반사실적 의존 관계다.
2. M을 실현하는 물리적 속성들 P1 P2, … Pn에 있어서, Pi와 B 사이에 엄밀한 법칙이 성립한다.

이 경우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의문은 도대체 왜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인과 관계가 동시에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기도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는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범위한 일치를 설명되지 않는 우연으로 남겨두는 이론은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의의 눈길을 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이러한 우연을 가정하는 것은 “인과가 있는 곳에 엄밀한 법칙이 반드시 있다”는 데이빗슨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여기서의 ‘반드시’는 필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의 일치를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것이 배제된다.

⁷ Davidson (1993).

“인과가 있는 곳에 반드시 엄밀한 법칙이 있다”는 데이빗슨의 원리를 인과가 적용되는 사건들의 외연을 제약하는 원리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왜 모든 인과 관계를 맺는 사건들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가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입장은 모든 인과 관계를 온전히 엄밀한 물리적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범위 안에 제한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물리계의 폐쇄성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시 부수현상론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왜 인과 관계의 외연이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범위 내에 제한되는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시될 수 있는 납득할만한 대답은 바로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물리적 성질이 인과의 유일한 토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보자. 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가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설명되지만, 앞의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기술할 경우에 이 사건과 결과로서의 물리적 사건 사이의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지 않는다고 하자. 다시 말하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엄밀한 법칙에 포섭될 수 있게 하는 앞 사건의 물리적 서술이 없다고 하자.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이 경우에 두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됨을 주장한다.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성질들이 인과적 효력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주장이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에 함축되어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사실은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의한 인과의 분석에 인과의 합법칙적 원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아도 드러난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의 단순한 형태가 인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음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통 원인에 의한 두 결과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서도 반사실적 의존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놓아도 반사실적 의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를 제외하기 위하여 앞의 단순한 형태의 반사실적 의존관계는 인과 분석을 위하여 세련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는,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이 어떻게 세련화되는 간에, 그것의 외연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는 범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념적 차원에서 반사실적 의존 관계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때, 엄밀한 법칙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한 인과 관계의 분석이 궁극적으로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규정되는 범위에 의하여 제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우선성을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은 인과 자체가 엄밀한 법칙에 나타나는 성질들에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은 맥로플린의 해석이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봉착함을 보여준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토대지워진 정신적 속성의 인과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그 외연이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면,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데이빗 슨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문제 자체와 어울리지 않으며, 물리계의 폐쇄성을 위배하고, 또한 포괄적 우연의 가정은 방법론적으로도 결함이 있다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는다. 한편, 인과의 합법칙성의 원리를 인과 관계를 부여할 수 있는 외연을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원리로 보면, 위와 같은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사실적 의존 관계를 통하여 정신적 속성이 갖는 인과적 효력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주목할 점은 위의 논의는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그를 구현하는 물리적 속성이 갖는 것 이외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사실적 의존 관계든 다른 관계(예를 들어, 포더의 느슨한 법칙)든 그것이 엄밀한 법칙에서 제시되는 관계와 다른 것이라면 (사실 정신적 속성의 복수실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비환원주의가 정신적 속성이 인과적 독자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과의 토대가 되는 관계가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초된 인과 관계가 왜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포섭되는 관계와 외연이 일치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일단 이 문제가 제기되면 그 입장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빗 슨의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와 심적 무법칙성을 받아들이

면서 정신적 속성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인과의 합법칙적 특성의 원리를 맥로폴린과 같이 약하게 해석하여 정신적 속성의 인과적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원리를 표현한 문제의 논리적 조작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